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만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0.12.28(월)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청년 매입임대 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 (가전제품 등 비치)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는 비치 예정입니다.) * 지역별, 주택별 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주택유형)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매입형과 건축형이 있으며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매입형) LH가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여 임대 공급
 - (건축형) LH가 매입한 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 공급
- (모집인원 수) 입주 가능한 주택의 3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합니다.(지역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본 공고로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선정됩니다.
- (공급방법) 청약신청은 시·군·구별로 진행되며(예 : 경기 수원시 / 충북 단양군 / 서울 마포구),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시·군·구의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군·구의 신규 매입 또는 임대차 계약 해지된 주택 발생시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세대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유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사오니, 입력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 모집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접수 온라인 (PC,모바일)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온라인 (PC만 가능)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 (순번도래시)
'20.12.28(월)	'21.1.7(목) ~ '21.1.11(월)	'21.1.12(화)	'21.1.13(수) ~ '21.1.15(금)	'21.2.18(목)	'21.2.18(목)~

* 코로나 대응단계 격상시 상기 공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부득이 입주자모집 일정이 순연될 경우 추후 안내해드릴 예정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 주택 : 총 453호

- 주택 소재지, 면적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청소년쉼터 퇴소자 수시 우선 공급으로 인해 지역별 공급물량은 감소될 수 있습니다.
- * 건축형의 경우 미준공된 주택이 포함될 수 있으니 주택 상세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모집공고는 내가 현재 공급 가능한 주택 뿐 아니라 향후 공급할 주택(추가 매입, 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이 발생할 것에 감안하여 시군구별로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공동거주형은 1호에 실(방)별로 여러명에게 공급되는 형태의 주택임에 유의 >

※ 공동거주형인지 모르고 신청한 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약 신청하는 주택의 공동거주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매입형의 경우 동호지정시 희망하는 거주형태의 주택(단독거주, 공동거주)을 선택하여 계약체결을 합니다.(단, 성별이 지정된 공동거주형은 동성(同性)에 한하여 선택 가능)
- * 공동거주형 주택의 전용면적은 주택전체의 전용면적이 아닌 해당 실(방)의 면적입니다.
- * 공동거주형 주택 동호지정시 신청자의 형제자매(서류제출을 완료한 적격자인 경우에 한함)에 대한 우선공급이 가능합니다.(단, 주택별로 성별이 지정된 경우 가족의 경우라도 동성(同性)에 한함)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내용
임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6년 거주가능)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를 7회 연장 가능(총 9회, 최장 20년)
임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는 시중 시세의 40%(임대보증금 100만원), 2·3순위는 시중시세 50% 수준(임대보증금 200만원)이며,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임대보증금을 올려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최대 월임대료의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전환이율 : 연 6.0% (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 - (계산방법) 올라가는 임대보증금 × 6.0% ÷ 12개월 = 낮아지는 월임대료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올릴 경우 월임대료가 1만원 낮아짐 (단, 월임대료 하한기준액은 66,670원)

-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 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자격을 갖춘 청년(혼인 중이 아닐 것)

-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② 대학생(입학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대학교, 고등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순위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가구	본인 또는 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자
	차상위 계층 가구	본인 또는 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인 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본인 또는 부모가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 (검증 대상 기준(월) 1인 : 2,645,147원 / 2인 : 4,379,809원 / 3인 : 5,626,897원) * 본인과 부모의 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2,645,147원 이하인 자) * 본인의 총자산 23,7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소득 . 자산 기준

- 소득,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은 각 순위별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구분		1순위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2순위	3순위
소득	범위	본인 또는 부모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수급자 등 여부 판단	검증 대상 수에 따른 기준	2,645,147원
총자산	범위	-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검증안함	28,800만원	23,700만원
자동차	범위	-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검증안함	2,468만원	2,468만원
주택소유 여부	범위	본인	본인	본인
	기준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 I-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 자산 산정방법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		산정방법
소득		•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정기에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자산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산 자료를 근거로 월평균 소득 및 총자산을 산정하여 검증함

■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후 추첨으로 대상자 선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본인 또는 부모의 수급자 등 여부 * 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나.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3점 3점
② 소득수준이 소득기준 50% 이하 여부 * 2순위 또는 3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소득기준 50%는 (1인)1,322,574원/월, (2인)2,189,905원/월, (3인)2,813,449원/월	소득수준이 소득기준 50% 이하인 경우 *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합산 기준, 3순위는 본인 소득 기준	3점
③ 부모 무주택 여부	부모 무주택	2점
④ 타지역 출신 여부 * 신청자의 부모가 공급대상 지역 이외의 시·군(광역시 포함) 또는 다리 등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타지역 출신	2점
⑤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 여부 * LH, SH, 지방공기업 등 공공임대주택 제외	6개월 이상 거주 *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1점
⑥ 장애 여부	가.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2점
	나.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1점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공급단계	일정	내용
청약신청	'21.1.7.(수) 10:00 ~ '21.1.11.(월)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매입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센터)로 신청 가능합니다. * LH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가급적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조회가능 (위임장 첨부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전자공동 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전자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1.1.12.(화) (17:00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제출대상자는 LH 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서류제출대상자 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대상자 서류접수	'21.1.13.(수) 10:00 ~ '21.1.15.(금)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서류제출은 인터넷(PC)를 통해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공동인증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모바일 지원불가) 서류제출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개별안내 (예비자순번 발표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격별 무주택,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본인+부모(또는 본인 또는 세대)의 소득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신속한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를 위하여 자산 보유 기준 충족 여부는 계약 및 입주 이후 검증을 진행합니다.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비자 순번 발표	'21.2.18.(목) (17:00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입주자 순번은 LH 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당첨/낙찰자 조회에 게시하고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개별 안내 (21.2.18.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후 지정가능한 주택과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 LH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 및 열람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자산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순위는 계약체결 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일부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에서는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서류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안내

- 공고일(20.12.28)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서류접수는 온라인(PC)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모바일 지원불가)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순위) 본인과 부모 서명 (3순위) 본인 서명(부모 관련 배점 부여시 부모 모두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신청자 작성 [양식① 첨부]

■ 추가 제출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부모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의 등본상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행정복지센터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이혼시에 한해 제출 * 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제출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한 부모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모두 미등재된 경우에 한해 신청자, 부모 모두의 초본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임대차계약서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거주하는 자는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계약자는 본인 또는 부모로 한정)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순위만 제출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가구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필요 	신청자 작성 [양식② ③첨부]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순위만 제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1순위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수급자 가구	• 본인 또는 부모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본인 또는 부모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차상위 계층 가구	• 본인 또는 부모의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가구	• 본인 또는 부모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행정복지센터	
청 년 자 격	청년	• 없음 (주민등록상 1980.12.29 ~ 2001.12.28 출생인정) 만19세이상 ~ 만39세이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40세 이상 대학생	• (재학생) 재학증명서 •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각서(공사양식)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와 각서(공사양식) 제출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해당교육기관 신청자 작성 [양식④ 첨부]
	만 18세 이하 또는 만 40세 이상 취업준비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졸업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 (중퇴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근로형태확인서(사업주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재직중인 경우 또는 소득조회 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건강보험공단 (1577-1000) 해당교육기관 신청자 작성 [양식⑤ 첨부]

■ 온라인(PC) 서류제출 방법

✓ 청약서류 온라인 접수 서비스란?

청약 신청자가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PC)를 통해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공동인증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행정관청 발급서류) 서류발급 방법(온라인 or 종이)에 따른 아래의 전자화문서(전자파일)로 제출
 - 온라인 발급시(권장방식) : '정부24' 등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시 PDF파일로 저장(인쇄시 선택)하여 발급받은 파일을 LH 청약센터에 업로드
 - * 주요 행정서류별 인터넷 발급 사이트는 LH 청약센터 안내 참조
 - 종이서류 발급시 : 발급받은 종이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LH 청약센터에 업로드 (* 사진촬영 업로드시 문자식별이 불가하여 서류 재 접수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사진촬영보다는 스캔본 접수를 당부드립니다.)
- (기타서류) 동의서 및 확인서 등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인쇄하여 기재사항 작성 후 자필 서명하여 스캔 또는 사진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업로드

✓ 스캔 또는 사진촬영(모바일·디지털기기) 유의사항

- 스캔 또는 사진촬영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예시: 서류 사본 스캔, 인쇄미리보기 화면 캡처,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 불가합니다.
-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번에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촬영하여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병합제출 권장)
-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파일은 인쇄하였을 때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접수 파일 형식은 6종(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

※ 상기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전자화문서가 접수된 경우 적합한 서류로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불응시 서류미제출로 간주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인터넷 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입력(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은 신청일자별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청약은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된 주택내역의 임대조건은 공고일 당해 연도 계약기준 금액이며 계약일정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주택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는 청약접수기간 및 계약체결 전 LH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 여건에 맞게 주택 개방일정을 진행합니다. * 주택개방일정은 별도 공지사항으로 안내 예정임
동호 지정 계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건물별 호수 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안내문이 발송되며, 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정해집니다. •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군·구의 신규 매입 또는 임대차 계약 해지된 주택 발생시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계약물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계약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관련 (기금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며, 자산검증 결과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는 해당 순위의 임대조건으로 변경되며, 부적격으로 판명된 세대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은 자산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재계약 자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6년 거주가능)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반환한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경우 다른 공급대상지역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를 7회 연장할 수 있으며 (총 9회, 최장 20년), 소득·자산 등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여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또는 비치 예정입니다.) * 지역별, 주택별 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분실, 파손, 훼손, 멸실된 가전제품 등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비치된 가전제품 등 분실 발생시 임차인은 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동(棟)단위로 매입한 주택 내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 신청인은 입주 후 지역편의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지역수요, 주택특성, 입지여건 등에 따라 지역편의시설의 활용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며, 임대료 납부고지서 수령방법은 모바일 또는 이메일 고지서(이빌링) 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 동일주택에 2인 이상이 입주시 주택(공동거주형)에 부과되는 관리비 등은 각 호에 부과된 금액을 1/n로 안분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별 면적 차이가 큰 경우 등에는 실별 계약면적을 안분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확인을 위해 내의 현장 방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방문조사 요청에 대한 미협조시 입주자 선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임대주택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LH는 입주대기자의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주청소는 입주자께서 직접 실시하여야합니다. • 기타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6

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 공급대상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공급대상지역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연락처
강원 원주시	LH 원주권주거복지지사 원주시 양지로26, 원주원예농협하나로마트 3층	033-737-7712
경기 부천시	LH 부천권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281 동화빌딩6층	032-890-5280, 032-450-8253
경기 수원시	LH 수원권주거복지지사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6 광교안효빌딩 11층	031-323-9129
경기 평택시	LH 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0 아트타워 2층	031-8094-5027
경남 진주시	LH 경남서부권주거복지지사 경남 진주시 술밭로 121(상대동), 씨티프라자 2층	055-922-1500
경북 경산시	LH 대구동부권주거복지지사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로 40 명진빌딩 4층	053-960-3627
경북 포항시	LH 경북동부권주거복지지사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69, 명선빌딩 2층 (세명기독병원 부근 기업은행건물 2층)	054-280-4750 054-280-4763
대구 남구, 북구, 서구	LH 대구북부권주거복지지사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30, 1층	053-210-8315
대구 달서구, 달성군	LH 대구서부권주거복지지사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 441(5층)	053-610-9922
대전 대덕구, 유성구	LH 대전북부권주거복지지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74번길 12 (더그린2차) 1층	042-470-0200
대전 서구, 중구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1층 행복나눔센터	042-470-0200
부산 금정구, 해운대구	LH 부산동부권주거복지지사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구서동), BN빌딩 3층 (※ 주차불가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요망)	051-460-6921 051-460-6922

공급대상지역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연락처
부산 남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서구, 연제구, 영도구	LH 부산서부권주거복지지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사학연금회관빌딩 3층	051-460-5937 051-460-5599
울산 남구	LH 울산사업본부 주거복지사업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79 한화생명빌딩 2층	052-932-4821 052-932-4822
인천 남동구, 연수구	LH 인천남동권주거복지지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12 (구월동 1542-2), 두용프라자 6층	032-717-5224
인천 미추홀구, 부평구	LH 인천북서권주거복지지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434 에이스빌딩8층	032-717-8532
충남 논산시	LH 충남남부권주거복지지사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50(가양동) 나로프라자 5층	042-349-4610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문의사항	LH 콜센터 1600-1004
인 터 넷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apply.LH.or.kr/)

2020. 12. 2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고객정보시스템 운영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input type="checkbox"/>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 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input type="checkbox"/>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input type="checkbox"/>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input type="checkbox"/>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득·재산·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 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 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대료 결제(지로, 자동이체)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계약체결 안내문, 소명 안내문 등의 e그린우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입주자여부 검증결과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²⁾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작성양식③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2~3순위만 제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세대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인]
	분양권	예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input type="checkbox"/>		원	[주주(보유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input type="checkbox"/>		원	[출자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예 <input type="checkbox"/>		원	[차주]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차주]
<p>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p> <p>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p> <p>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p> <p>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p> <p>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p> <p>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p> <p>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p> <p>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p>					
신청인 :					(인)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 귀하					
<p>※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해당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복학(입학) 예정자의 증명서류 제출 각서

(만 18세 이하 또는 만 40세 이상)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대 학 명 :

상기 본인은 현재 휴학 중(입학 전)이나 다음 학기 복학(입학)예정자로서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 중 "대학생"으로 신청하였으며, 다음 학기에 복학(입학)을 하지 않는 경우 공급신청 미자격자가 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복학(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것임을 서약하며,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 귀하

근로형태 확인서

(만 18세 이하 또는 만 40세 이상 취업준비생의 직장 재직 여부 확인용)

사업(장) 현황		사업체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근로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로형태		<input type="checkbox"/> 정규직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비정규직일 경우		<input type="checkbox"/> 단기 또는 임시 고용 <input type="checkbox"/> 채용형 인턴	<input type="checkbox"/> 체험형 인턴 <input type="checkbox"/> 일용직 근로
근로기간		20 ~ 20	
근로 계약기간		<input type="checkbox"/> 3개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3개월 이상 <input type="checkbox"/>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주 근로시간		<input type="checkbox"/> 1주 15시간 미만	<input type="checkbox"/> 1주 15시간 이상
4대 보험 가입여부		<input type="checkbox"/> 가입	<input type="checkbox"/> 미가입

신청자가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지원받기 위한 신청자 근로형태에 대하여 상기 사항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신 청 인 : (인)

확인자(사용주) : (인)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 귀하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p>*「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p>
총자산	<p>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p>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p>자동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p>금융 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

구분		산정방법
		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이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상시 근로 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 근로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 근로 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 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 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 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 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 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 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 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 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달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 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달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 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자산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국토부 주택전산망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